



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3. 4. 26.(수)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-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행정복지위원회
전문위원 한민석

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34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3. 4. 14.
- 회 부 일 : 2023. 4. 14.

2. 개정이유

- 상위 규정인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목적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
 - “고향사랑기부제 기부환경 조성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산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”를 추가(제1조)
 - ※ 고향사랑 서포터즈 구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
 - 유통센터 정의 신설(제2조)
 - 고향사랑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신설(제19조)
 - 표창 신설(제20조)
- 종전 제5조를 제6조 답례품의 종류, 6조의2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과 구분
- 업무분장 변경사항 반영

- 선정위원회, 기금운용관, 심의위원회 위원을 자치행정과장에서 세계화담당관으로 변경 (제4조, 제11조, 제1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(2022. 7. 5. 시행)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(2022. 12. 1. 시행)

○ 기타사항
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(기획예산담당관-1777)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담당관-1756)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반영(인구가족과-55045)
- 입법예고(2023. 2. 27. ~ 3. 21., 22일간) : 제출 의견 없음
- 조례규칙심의 : 원안가결(기획예산담당관-4652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목적 추가와, 유통센터 정의 신설, 고향사랑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신설 및 표창 내용을 추가하였으며, 답례품의 종류와 선정시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였음.
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주민복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조속한 정착과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개정사항으로, 관계 법령에 적합하나,
- 불필요한 조사의 사용 등 조례의 완성도가 부족하고, 위임조례임에도 법률의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많아, 보다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